

적용일 : 2005년 6월 1일 진료분

## ◎ 신설

### 1. 경피적 척추후골풍선복원술 (kyphoplasty) 인정기준

경피적 척추후골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 다음 -

가.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나. 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서 압박변형이 10-50%인 경우 (단,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50%이상인 경우라도 인정 가능함)

다. 상기 '2)' 항의 보존적 요법 없이 조기 시행 가능한 환자는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80세 이상의 경우

※ 확인방법

가.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 신설사유 : 경피적 척추후골풍선복원술의 수가가 신설 (고시 제 2004 - 85호, '04.8.1 시행)되었고, 유사 시술인 경피적 척추 성형술에 비해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시술이므로 구체적인 적응증 및 확인 방법을 정한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

◎ 변경

1.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 경 전	변 경 후
<p>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5) 격리실 입원료 중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p> <p>(1) ANC가 500/mm<sup>3</sup>이하인 경우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p> <p>(2)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중등도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p> <p>(3) AIDS환자</p> <p>나. 격리기간</p> <p>- 상기(1):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sup>3</sup>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p> <p>- 상기(2):중등도 이상의 급성 GVHD가 경도로 호전될 때까지</p> <p>- 상기(3):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p> <p>* 다만, 격리실 입원은 위 '가' 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위 규정에 불구하고 격리실 입원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의함.</p>	<p>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5) 격리실 입원료 중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p> <p>(1) ANC가 500/mm<sup>3</sup>이하인 경우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p> <p>(2)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중등도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p> <p>(3) AIDS환자</p> <p>나. 격리기간</p> <p>- 상기(1):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sup>3</sup>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p> <p>- 상기(2):중등도 이상의 급성 GVHD가 경도로 호전될 때까지</p> <p>- 상기(3):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p> <p>* 다만,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p>

◇ 변경 사유 :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적용일 : 2005년 7월 1일 진료분

## ◎ 신설

### 1. 슬관절치환술후 부품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슬관절치환술 후 부분(일부 부속품)만 교체하는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음 -

가. patella, femur, tibia부품을 교체시

예시) ① patella, femur 또는 tibia를 단독 시행

② patella와 femur를 동시 시행

③ patella와 tibia를 동시 시행

: 자71-1나(2) 슬관절 재치환술(부분치환)의 소정금액과 제거료[자71-나(2) 슬관절 부분치환술의 50%]를 산정

나. 위 '가'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속품(bearing, poly liner 등)만 교체시

: 자71-1나(2) 슬관절 재치환술(부분치환)의 소정금액을 산정(제거료 산정 불가)

◇ 신설사유: 슬관절치환술 후 주요 부품(patella, femur, tibia)을 교체하는 경우와 나머지 중간부속품(bearing, poly liner 등)을 교체하는 경우는 기술난이도가 서로 다르므로,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거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재수술료와 제거료를 산정하고, 중간 부속품만 교체하는 경우는 제거시의 난이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제거료를 제외한 재수술료만 산정하도록 함.

※ patella, femur, tibia부품을 모두 교체하거나 femur와 tibia부품을 같이 교체하는 경우는 슬관절 전치환술에 해당됨.

◇ 지침해설 :

○ 슬관절치환술을 시행한 후 부품에 대한 기능상의 문제 등으로 일부 부품만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수가산정방법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지침을 신설함

○ 이미 삽입되어 있던 슬관절 치환재료의 일부 부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부품을 삽입하는 행위는 슬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로 인정하나, 부품에 따라 제거 난이도는 각각 상이하므로 구분하여 수가를 달리 산정토록 한 것임. 즉,

- 주된 부품(슬개골, 대퇴골, 경골)을 단독 또는 동시에 제거(예시 참조)하는 경우는 제거시의 난이도가 있으므로 제거료를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며,

- 주된 부품 이외의 중간부속품(베어링 등)만을 제거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적으므로 제거료를 별도 인정하지 않는 것임.

## 1. 추진개요

### □ 기획현지조사의 목적

- 정기 현지조사는 자율시정 통보기관 중 미 시정 요양기관, 심사상의 문제기관 및 제보 등을 기초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허위·부정청구 근절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 기획 현지조사는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중점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음

### □ 기획현지조사 대상기간

- 최근 보험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분 기준하여 6개월분을 기본으로 조사하되, 조사의 목적에 따라 조사시점과 기간을 달리 할 수 있음
- 단, 허위청구 확인시 조사대상기간을 1년 이상 확대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 현지조사에 준함

## 2. 2005년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편법 및 왜곡된 청구행태 개선을 위한 중점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 ◇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대상기관은 예측가능한 조사로 부담감소, 비대상기관은 1차적 자율시정기회 부여

### □ 조사계획

- 기획현지조사 목표 : 6개 대상항목, 160개 요양기관

#### ○ 조사 대상항목 선정

- 원외 처방 유실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
- 상병명과 투약·시술내역을 묶음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중)
-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3/4분기중)
-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이증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3/4분기중)
- 수진자당 보유 상병 수가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3/4~4/4분기중)
- 의약품 대체청구 관련 조사(4/4분기중)

#### ○ 기획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방법

- 데이터마이닝 기법 및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등을 통한 선정
- 조사방법 및 행정처분 등은 정기 현지조사와 동일

### □ 조사의 시기·항목 등 사전예고 실시

- 2005년도 기획현지조사의 대상항목 6개를 선정하여 사전예고
- 언론 및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 연계획 외에 긴급히 기획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실시 전 예고

### □ 조사결과의 활용

- 국민건강보험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적극 발굴
- 요양급여 기준 등 제도운영실태를 모니터하여 정책고객인 요양기관과 환자의 불편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feed-back)토록 개선 사항 발굴
- 사회적진 등의 예상되는 변화 및 사회적 분위기에 대응한 기획현지조사의 실시로 국민만족도 제고 및 요양급여비용의 적정 청구 유도
- 요양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율개선 유도
- 의약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 결과 및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대화를 통해 자율적인 적정청구 및 건전 진료 풍토 조성

- 기획현지조사의 사전 예고제 실시 및 조사결과의 환류
  - 현지조사에 대한 불만 최소화
  - 요양기관의 자율시정기회 부여
  - 요양기관의 의뢰 수렴 강화 및 제도개선 역할 증대
  - 의약계와의 파트너십 구축 계기 마련